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호)

○ 2026. 7. 16.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7. 1.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7. 6.

다. 상 정 일 자 : 2026. 7. 16.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국장)

○ 하반기 잠원느티나무쉼터 개관에 따라 관련 조례에 시설명, 위치, 시설 개요를 추가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최충열)

■ 개정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인 잠원느티나무쉼터의 신

규 구성에 따라 위 시설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제출된 것임.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²⁾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검토

- [별표 1]은,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로 잠원느티나무쉼터의 신규 설치(2026. 12월)에 따라 이를 같은 시설에 추가한 것으로 그 시설의 개요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아래표와 같고,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임.

시설 개요 및 소요예산

○ 시설 개요

- 1)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 2)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시설명	소재지	면적	시설 특징 및 내용	개관일
잠원 느티나무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4길 34(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 업 일환, 기부채납 시설	399.8m ² (약121평)	프로그램실 및 사무실, 시니어라운지, 다목적체육실 등	'26. 12월

○ **소요예산** : 연 300,000천원 민간위탁금 지급 예상

※ 2027년연간운영비 적용 기준, 이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연 3% 상승 추산 산출

○ **예산 산출근거**

※ 방배4동느티나무쉼터 운영현황과 사회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산출

구분	금액(단위 :천원)	주요내용
인건비 등	175,000	급여, 제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기타후생경비
운영비	43,000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사업비	700,00	강사료, 행사비, 행사물품구입비 등 제경비
시설비	12,000	시설장비유지보수, 전산기기 사무용 비품 프로그램장비 등 시설운영 장비
합계	300,000	-

○ 참고로 관내 기존의 느티나무쉼터 6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도 수십여 건에 이르고 있는 등 신중년과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 도모를 위해 활발한 사업들을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관내 기존의 느티나무쉼터 6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

시설명	내곡 느티나무쉼터	서초 느티나무쉼터	양재 느티나무쉼터	방배 느티나무쉼터	반포 느티나무쉼터	방배4동 느티나무쉼터
소재지	염곡말길9 (내곡동)	반포대로1길 53-3 (서초동)	바우외로41길 72-9 (양재동)	남부순환로287길 17-4(방배동)	신반포로 127 (반포동)	방배중앙로 118(방배동)
개관일	2017.1.25	2018.2.23	2018.2.28	2021.5.7.	2024.5.28.	2025.12.29.
운영형태	민간위탁 운영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2024.1.1.~2028.12.31)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사)한국복지환경 디자인연구소	재단법인 서초복지

				(2026.3.18. ~2031.3.17.)	(2024.5.1. ~2029.4.30.)	돌봄재단 (2026.3.25.~ 2031.3.24.)
규모	연면적 : 5,918.96㎡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697.22㎡ (지하1층~지상 4층)	연면적 : 473.79㎡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519.5㎡ (지하1층~지상4층)	면적 : 582.98㎡ (반포2동 열린 문화센터 4층)	면적: 455.45㎡ (서초시니어 플라자 2층)
시설현황	4층: 치매안심센터 3층: 아트홀, 북카페, 베이커리, 마음 건강센터 2층: 사무실, 라운지, 심리상담센터 1층: 늘봄카페, IT체험존 지하: 헬스텍, 스크린 파크 골프	4층: 건강키움터 3층: 경로당 2층: 강의실 1층: 반딧불센터 지하: 헬스텍	4층: 사무실, 휴게실 3층: 경로당 2층: 강의실 1층: 늘봄카페 지하: 헬스텍	4층: 북카페, 강의실 3층: 강의실, 사무실 2층: 경로당 1층: 늘봄카페 지하: 헬스텍	강의실 다목적체육실, 상담실, 사무실, 라운지 등	사무실, 강의실, 다목적체육실, 회의실 라운지(1층) 등
종사자수	16명			3명	4명	3명
제공 서비스	어르신 대상 문화·여가, 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노후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현재 운영 중인 느티나무쉼터 외에 추가 조성계획이 있는지?

답> 현재 느티나무쉼터는 내곡느티나무쉼터를 시작으로 총6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추가로 양재2동 구룡주차장 내에 조성되는 구룡느티나무쉼터가 2027년 개관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앞으로도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별 수요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조성해 나가겠음.

5. 토론평 및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짜구정리내용 : 없음